



Helen Doron  
International

헬렌도론 인터내셔널

EXCELLENCE IN EDUCATION SINCE 1985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 2015037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5.04.3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6.01.27.

# 정보공개서

헬렌도론코리아(주)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헬렌도론코리아(주)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 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91 번길 100  
(외삼미동, 헬렌도론코리아)]

[가맹사업부의 대표전화번호 : 070-4946-3053]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31-8003-1062]

[가맹본부의 홈페이지주소 : www.helendoron.kr]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별첨 2 : 재무제표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2013.01.09	2013.01.09	헬렌도론코리아(주) 사업자등록번호 135-86-29059 법인등록번호 134811-0260688

###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헬렌도론코리아(주)	Helen Doron (헬렌도론)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91 번길 100(외삼미동, 헬렌도론코리아)		
특수관계인 (임원)	(대표이사)심경은 (사내이사)최옥심 (사내이사)최성기 (감사)최옥선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베나야요엘도론	070-4946-3053	031-8003-1062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추가 설명
명칭	Helen Doron	영어학원

상 호	Helen Doron OO 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022182520000 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6896340000 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4439030000 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3868670000 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data-bbox="472 1037 778 1088"><b>Helen Doron</b></p>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3630280000 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3313740000 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3261130000 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3261120000 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3261110000 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3087390000 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3087400000 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표 등록번호: 4013087410000 자세한 내용은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3,888,126	6,675,461	-2,787,334	5,465,873	-61,522	-89,735
2023년	4,835,864	6,658,055	-1,822,190	5,723,247	-56,291	-33,754
2024년	4,747,893	6,698,910	-1,951,016	4,874,113	-63,947	-128,826

###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바로 전 3년 동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베나야요엘 도론	2023.12~현재	헬렌도론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심경은	2023.03~2023.12	헬렌도론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2023.02~현재	헬렌도론코리아(주) 사내이사	경영지원
	최옥심	2023.03~현재	헬렌도론코리아(주) 사내이사	경영지원
	최성기	2023.03~현재	헬렌도론코리아(주) 사내이사	경영지원
	최옥선	2023.03~현재	헬렌도론코리아(주) 사내이사	경영지원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3	63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등록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41 류	출원일 2022.10.14 등록일 2024.07.05	출원번호 4020220188074 등록번호 4022182520000	헬렌도론리미티드	2034.07.05

	41 류	출원일 2019.09.20 등록일 2021.02.08	출원번호 4020190145107 등록번호 4016896340000	헬렌도론리미티드	2031.02.08
	41 류	출원일 2017.10.19 등록일 2019.02.07	출원번호 4020170132321 등록번호 4014439030000	헬렌도론리미티드	2029.02.07
	41 류	출원일 2016.12.28 등록일 2018.08.13	출원번호 4020160119291 등록번호 4013868670000	헬렌도론리미티드	2028.08.13
<b>Helen Doron</b>	41 류	출원일 2016.12.28 등록일 2018.05.28	출원번호 4020160119286 등록번호 4013630280000	헬렌도론리미티드	2028.05.28
	41 류	출원일 2016.12.28 등록일 2018.02.14	출원번호 4020160119269 등록번호 4013313740000	헬렌도론리미티드	2028.02.14
	41 류	출원일 2016.12.28 등록일 2018.01.30	출원번호 4020160119288 등록번호 4013261130000	헬렌도론리미티드	2028.01.30
	41 류	출원일 2016.12.28 등록일 2018.01.30	출원번호 4020160119284 등록번호 4013261120000	헬렌도론리미티드	2028.01.30
	41 류	출원일 2016.12.28 등록일 2018.01.30	출원번호 4020160119266 등록번호 4013261110000	헬렌도론리미티드	2028.01.30
	41 류	출원일 2016.12.29 등록일 2017.12.01	출원번호 4020160120280 등록번호 4013087390000	헬렌도론리미티드	2027.12.01
	41 류	출원일 2016.12.29 등록일 2017.12.01	출원번호 4020160120282 등록번호 4013087400000	헬렌도론리미티드	2027.12.01
	41 류	출원일 2016.12.29 등록일 2017.12.01	출원번호 4020160120286 등록번호 4013087410000	헬렌도론리미티드	2027.12.01

\*당사는 상기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부터 [Helen Doron] 가맹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정식으로 위임받았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II. 가맹본부의 [Helen Doron]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 2019년 03월 0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3년 01월 09일)

###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헬렌도론 코리아(주)	Helen Doron	베나야요엘도론	2019.03~2023.03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91번길 100(외삼미동, 헬렌도론코리아)
헬렌도론 코리아(주)	Helen Doron	심경은	2023.03~2023.12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91번길 100(외삼미동, 헬렌도론코리아)
헬렌도론 코리아(주)	Helen Doron	베나야요엘도론	2023.12~현재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91번길 100(외삼미동, 헬렌도론코리아)

### 3. [Helen Doron]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Helen Doron	교육(외국어)	영어

###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Helen Doron]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7	4	3	5	3	2	8	7	1

서울	-	-	-	-	-	-	-	-	-
부산	1	-	1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3	3	-	3	3	-	3	3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3	1	2	2	-	2	3	2	1
강원	-	-	-	-	-	-	1	1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1	1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Helen Doron] 가맹점 수

당사의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년	4	-	-	-	-	4
2023년	4	-	1	-	-	3
2024년	3	4	-	-	-	7

### 6. [Helen Doron]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Helen Doron]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가 직전년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평균 매출액						비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7	804,076	6,862	1,727,273	11,438	45,455	652	6곳 산정
서울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전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기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강원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남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남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 한 매출액은 가맹점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른 매출액 입니다.]

[당사의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이 안 되는 가맹점이 있어 일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1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7개가 아닌 실제 6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

지는 았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헬렌도론]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헬렌도론]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7	1,183일

## 9. 지사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VAT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광고비		(비공개)	3,887	-
판촉비	-	(비공개)	-	-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금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주소	전화번호
	문정법조타운 지점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4-2	02-3400-6100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업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지점)방문 → ③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인터넷뱅킹(www.ibk.co.kr) 접속 → ② 뱅킹 로그인 → ④ 부가서비스/가맹금인터넷예치서비스/가맹점사업자 클릭 ⑤ 가맹본사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⑥ 가맹본부 확인 → ⑦ 가맹점사업자 정보 입력 및 예치금액 입력 → ⑧ 가맹금예치 완료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기업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계좌 개설시 필요서 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기업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 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Helen Doron]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339,000, 부가세 포함]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비고
	A 타입	B 타입	C 타입		
가맹비	88,000	33,000	22,000	계약체결 시 지급	가입비(가맹비의 10%), 개점 시 정보·자료제공 및 운영 교육, 오픈 지원의 대가(가맹비의 90%)
콘텐츠사용료	22,000	11,000	5,500		콘텐츠사용에 대한 대가

**\*A 타입:** 헬렌도론인터내셔널, **B 타입:** 헬렌도론잉글리쉬, **C 타입:** 헬렌도론써니센터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 개월 이내(③의 경우 당사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해지 시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① 당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 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 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사업법 제 9 조제 1 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보증보험증권	A타입: 20,000	보증보험증권은 본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보증보험기관의 약관에 따라 갱신/유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상의 의무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당사는 보증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제13조)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소멸됩니다.
	B타입: 10,000	
	C타입: 5,000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A 타입	B 타입	C 타입
합계	130,000	54,000	32,500
가맹비	88,000	33,000	22,000
콘텐츠사용료	22,000	11,000	5,500
보증금 (보증보험증권)	20,000(부가세 없음)	10,000(부가세 없음)	5,000(부가세 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A타입: 헬렌도론인터내셔널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0㎡기준 (약 100평)	면적 3.3㎡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251,000 ]	2,510	-	-
학원 집기, 비품	별첨1_1. 거래 상대방 참고	31,000	310	가맹본부가 지급받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가구, 전산 사무기기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200,000	2,000		목공, 전기, 페인트, 소방
광고비		20,000	해당 없음		전단, 현수막

B타입: 헬렌도론잉글리쉬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99㎡기준 (약 30평)	면적 3.3㎡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5,000	2,500	-	-
학원집기비품	별첨1_1. 거래 상대방 참고	20,000	666,7	가맹본부가 지급받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가구, 전산 사무기기
인테리어 (내장공사)		45,000	1,500		목공, 전기, 페인트, 소방
광고비		10,000	해당 없음		전단, 현수막

C타입: 헬렌도론써니센터

구분	지급대상	금액 99㎡기준 (약 30평)	면적 3.3㎡당 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5,000	2,500	-	-
학원집기비품	별첨1_1. 거래 상대방 참고	20,000	666,7	가맹본부가 지급받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가구, 전산 사무기기
인테리어 (내장공사)		45,000	1,500		목공, 전기, 페인트, 소방
광고비		10,000	해당 없음		전단, 현수막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인테리어, 간판 매뉴얼과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로부터 감리비, 도면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당사는 귀하에게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①해당 사업권에 대한 지분을 51% 이상 소유한 자 ②학원법이 정하는 설립인의 자격요건
종업원(강사)	특별한 기준 없음	당사의 당사 HDE 교습방법 자격을 갖춘 강사 (단, 교육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Helen Doron]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  
랍니다. -경기도-**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8-1]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정기납입경비 (로열티)	당사	아래 표 참고	매월 말일 까지	미사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소멸성 비용	영업표지 사용 및 가맹점 관리에 대한 대가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I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별첨1_1. 거래상대방 참고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구분	로열티 금액	지급기한	비고
A 타입	월 매출액 5.5%	매월 말일 까지	교습비(셔틀버스비 포함)
B 타입	월 매출액 5.5%	매월 말일 까지	
C 타입	월 매출액 5.5%	매월 말일 까지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4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

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나면 당사는 귀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재가맹비(10년 후 신규 가맹계약서상 가맹비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는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본 정보공개서 [1-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 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제 3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자가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귀하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영업표지 사용권 대가의 일부 금액을 반환요청 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Helen Doron]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게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나,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은 교육, 훈련, 노하우 제공비 및 보증금을 당사에게 지급하고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양수인이 “갑”과 “을”의 잔여계약 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 가맹비, 콘텐츠사용료, 보증금을 납입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가맹비 콘텐츠사용료, 보증금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울러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7-2]에 나와 있습니다.

#### 양수가맹계약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A 타입	B 타입	C 타입
합계	42,000	21,000	10,500
교육, 훈련, 노하우 제공비	22,000	11,000	5,500
보증보험증권	20,000	10,000	5,000

#### 신규계약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A 타입	B 타입	C 타입
합계	130,000	54,000	32,500
가맹비	88,000	33,000	22,000
콘텐츠사용료	22,000	11,000	5,500
보증보험증권	20,000	10,000	5,000

당사의 승인을 거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가맹금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교육훈련이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1. 직계존비속 및 부부 간의 승계
2. 개인이 법인설립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될 때
3.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명의로 변경될 때
4. 기존 가맹점이 대표자 명의변경 없이 당사의 허락 하에 소재지를 이전하여 계속 영업을 할 때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Helen Doron』 가맹학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표·상호·로고·휘장 등의 영업표지, 기타 등기·등록된 권리, 영업비밀, 노하우 및 교재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는 당사에게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산 및 회원 관리 프로그램 등을 반환하고,

『Helen Doron』 가맹학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약벌을 부과하고,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사의 상표 상호 등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형사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귀하가 본 계약 해지 또는 만료 당시 당사에게 공급받은 교재는 당사와 귀하의 합의하에 교재의 상태를 감안하여 적정가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 종료와 동시에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⑤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당사와 합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가맹점을 가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첨1\_2.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Helen Doron]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Helen Doron]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VAT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3. 서비스·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용역의 판매 제한

①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서비스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서비스·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용역 명	위반 시 책임	비고
교재 당사의 교육 프로그램	상품 공급 제한 및 중지, 계약 해지	당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서비스·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기간 중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서비스, 용역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경영환경의 변화 등 필요 시 기존 서비스, 용역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장비 및 집기 추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입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서비스를 변경 및 추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의 판매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별첨 1\_1 또는 정보공개서 V-1-1) 품목 중 거래상대방 강제품목**을 귀하의 점포 외의 다른 곳(온라인 판매 포함)에 판매/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아래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용역 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수강료	유치부종일반 평균 권장가격: 1,200,000 원 유치/초등 오후반 평균 권장가격: 250,000 원~600,000 원	좌측 권장가격 기준	단, 해당지역의 교육청이 정하는 수강료 기준 엄수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영어학원	Helen Doron	해당 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A 타입	거주인구 기준 20,000세대 당 1점포를 원칙으로 하되 인구밀집도, 교통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의하에 결정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되며 상권에 따라 상기 기준보다 더 넓거나 좁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B 타입	거주인구 기준 5,000세대 당 1점포를 원칙으로 하되 인구밀집도, 교통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의하에 결정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되며 상권에 따라 상기 기준보다 더 넓거나 좁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C 타입	거주인구 기준 2,000세대 당 1점포를 원칙으로 하되 인구밀집도, 교통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의하에 결정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되며 상권에 따라 상기 기준보다 더 넓거나 좁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에 한해 [Helen Doron]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및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90일 사이 통보)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계약기간 만료 전 60일 이내 동의여부 회신)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48.8%	51.2%	0.0%	0.0%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 전용판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0%	0.0%

## 6. 계약기간,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Helen Doron]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최초 계약기간	갱신 시 계약기간
A 타입	4년	1년
B 타입	3년	1년
C 타입	3년	1년

### 2) 계약 갱신거절 사유

계약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사유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V-6-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계약서 제16조 제4항)

- 16.4.1 본 계약의 4.2 항을 위반한 가맹점 개설 및 운영 불이행 또는 본 계약 및 지침에 따른 가맹점의 지속적인 운영 불이행.
- 16.4.2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소속 교사의 라이선스 또는 지침에 따른 운영 불이행, 특히 학생수 12명 이내 집단교습, 모든 학생들의 완전한 HDE 학생용 세트 구입 불이행.
- 16.4.3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소속 교사의 다른 교사의 권리 침해 또는 가맹본부의 영업권과 평판에 대한 손상 야기, 특히 학생 및/또는 학부모에 대한 비합리적인 행동, 예를 들면, 차별하는 행위.
- 16.4.4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운영과 고객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 16.4.5 경업금지 또는 기밀준수 조항 위반.
- 16.4.6 가맹점사업자의 본 계약 및 지침에 규정된 가맹본부 또는 HELEN DORON LTD.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정보제공 불이행.
- 16.4.7 미승인 제품/서비스의 판매/제공 또는 미승인 공급자로부터의 물품 구매.
- 16.4.8 본 계약상 권리의 양도와 관련된 14 조 또는 3.9 항 및 3.10 항의 규정 위반.
- 16.4.9 실체 또는 사업체로서의 HDE 프랜차이즈의 평판과 정상적인 운영에 손상을 초래하는 사업상의 결정을 내리고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사업상의 결정이나 실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접수한 경우.
- 16.4.10 프랜차이즈 수수료, 수업료 로열티/관련 서비스 로열티, HD IMS 수수료, 또는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6.4.11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계약적인 협력과 임무에 대한 지속적인 손상이 입증된 경우 및 제 3 자에 대한 시스템과 그 구성원에 관련된 심각하게 부적절한 언행을 통하여 가맹본부 또는 HELEN DORON LTD.의 평판을 손상시킨 경우.

**\*귀하는 당사에 아래와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제16조 제3항, 5항

16.5.1 가맹본부의 사업 중단.

16.5.2 가맹본부의 본 계약 2 조 위반.

16.5.3 가맹본부에 대한 정당한 파산절차 개시, 채권자집회 개최, 재원부족을 이유로 한 법원의 파산절차 개시 기각이 발생하여 30 일 이내에 그러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할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즉시 해지 사유(계약서 제16조 제2항)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 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6.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 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 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 개월 2 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7.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학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어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학원에게 가맹계약서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li> <li>○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할 것</li> </ul>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 부서 검토(현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li> <li>○ 양수인이 신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하게 소정의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li> </ul>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도인/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권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인수 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신규계약을 원하면 당사가 검토 후 양수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7-1)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 동업자, 대리인, 위임인은 교육비(A 타입 44,000 천원, B 타입 16,500 천원, VAT 포함)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행사, 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피상속인에게 교육훈련이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 귀하는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V-6-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V-6-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Helen Doron과 동일 업종인 학원 운영(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	국내 전 지역 및 해외지역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Helen Doron]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학원법 및 시도 조례에 따름	계약체결 시 협의	귀하가 연속하여 영업시간을 변경하거나 휴업할 경우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 3)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	----------

최소 2명 이상의 원어민 강사 (교사 1명 당 학생 수 12명 초과 금지)	직접 근무
--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Quality(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	프로그램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광고의 목적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당사는 [Helen Doron]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 및 지역별 광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브랜드광고 + 가맹점모집광고	<판촉>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판촉	전국 및 지역별 판촉			

				수 있습니다.
	개별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설정한 요건과 수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역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광고, 선전의 소재와 계획에 대해서는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0.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

“HELEN DORON LTD. 기밀정보”는 그 취득, 추출, 전달방식을 불문하고 문건, 서신, 도표, 도면 기타 서면형식의 자료에 포함된 귀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령한 모든 정보로서 권리, 운영방식, 데이터베이스 또는 교사 및 학생 명부를 포함한 의뢰인 명부, HELEN DORON LTD.의 운영방식, 모든 노하우, 기술, 과학, 영업 또는 사업 데이터, 고객, 학생, 교사 및 HELEN DORON LTD.와 그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표본과 정보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HELEN DORON LTD. 기밀정보는 또한 HELEN DORON LTD.E 교습방법에 의한 교육 시스템은 물론 당사가 개발한 마케팅 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제한 없이 포함합니다.

귀하는 이유를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밀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며 기밀정보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규정된 용도 또는 당사가 서면으로 승인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조항의 기밀정보에 대한 제한은 귀하 또는 제 3 자의 당사에 대한 기밀준수 약속의 위반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또는 만료 후에 저작권이 소멸된 기밀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귀하는 본 계약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제 3 자로에게 HELEN DORON LTD. 기밀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HELEN DORON LTD. 기밀정보 공개 대상을 교사, 종업원 및 기타 방식으로 귀하에 종사하는 직원 및/또는 관계회사에 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HELEN DORON LTD.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교사, 종업원 및 기타 방식으로 귀하에 종사하는 직원 및/또는 관계회사의 본 조항에 따른 기밀준수 의무는 당사가 제공한 서면의 기밀준수계약의 체결을 통해 부과된다. 귀하는 교사, 종업원 및 기타 방식으로 귀하에 종사하는 직원 및/또는 관계회사의 HELEN DORON LTD. 기밀정보 보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가 상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사는 본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로 인한 해지는 당사의 귀하에 대한 추가적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사업관련 정보를 인지한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사는 귀하로부터 입수한 정보(전산화 또는 비전산화)를 HELEN DORON LTD.의 운영과 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귀하 지역을 재매각할 경우 당사는 매수 후보자에게 귀하 지역의 운영실적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산화 정보의 사용에는 귀하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귀하는 본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귀하 또는 제 3 자의 당사 또는 HELEN DORON LTD.에 대한 기밀준수 약속의 위반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이 소멸된 정보 이외에는 프랜차이즈나 고습방법에 관련된 기밀정보를 사용하거나 HELEN DORON LTD.의 지적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당사가 제공한 기밀정보와 관련하여 귀하는 여하한 라이선스 또는 기타 권리도 취득하지 아니하며 당사가 제공한 기밀정보를 기반으로 여하한 특허 또는 기타 권리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계약서 16 조의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금지명령구제 등의 획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i) 가맹점 대표자에 의한 당사의 이메일 시스템 사용 또는, (ii) 가맹점 대표자의 본 정책사의 의무 또는 책임 위반으로 발생하거나 관련된 모든 책임, 손실, 청구, 합의금, 비용, 이자, 판정, 판결,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가치의 감소, 과태료, 요금, 벌금 또는 기타 부담금(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으로부터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 각자의 임원, 이사, 주주, 관리자, 회원, 법정대리인, 승계인, 대리인 및 양수인을 배상하고, 방어하며 보호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게 허위 매출 자료를 제공하였거나, 로열티 지급과 관련하여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게 납부한 3 개월간의 평균 로열티의 1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별로 지급해야 합니다.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16.7 항을 위반할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해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 일 ( 10 만원 )의 지체배상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집니다.

⑤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종업원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귀하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	5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기간 제외)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14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예치 안내 -가맹계약체결	1일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2일	
공사 착수	공사 실시	30일	
교육실시	운영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42시간	
영업설비/ 집기 입고	-책상, 책장 등 입고	2일	
초도물품 입 고	-교자재 등 입고	1일	
그랜드오픈	-영업시작 -예치가맹금 수령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학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의 자문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2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수령 후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p>▶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p> <p>▶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p>	<p>▶간판교체비용</p> <p>▶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p>	<p>▶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p> <p>▶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p>	<p>▶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lt;분할지급 시 절차&gt;</p> <p>▶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p>	<p>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p>

			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필요 시 진행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 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해당내용 없음

##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Helen Doron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VAT포함)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필수여부
신규 강사 교육(개점 전)	원장, 교사 직무교육 및 캠퍼스 참관	집단강의, 개별강의	42시간	최초 가맹비에 포함	필수 교육
당사 필요 시 정기 또는 비정기 교육 (상반기, 하반기)	Workshop	집단강의 (전 직원 대상)	6시간	*교육내용에 따 라 변동 가능	필수 교육
당사 필요 시 정기 또는 비정기 교육 (상반기, 하반기)	교육과정협의회	집단강의 (원장 대상)	시간	과금 없음	필수 교육
관리자, 신규강 사교육 (개점 이후)	관리자, 강사 직무교육	집체교육 or 개별교육	42시간 (점주 협 의하에 변동될 수 있습 니다.)	1 인당 800,000 원	관리자 지정 /교체 시, 신규강사 체 용 시 필수 교육

### 2.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3.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교육내용에 따라 귀하의 관리자, 종업원이 포함될 수 있음)는 당사가 제공하는 개점 전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습득 정도가 낮거나, 교육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재

교육과 함께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재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당사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신규 서비스 교육 외 정기 교육 및 부 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2024년 말 기준 다음과 같이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헬렌도론 동탄점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91 번길 10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11년 11개월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400,695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회계장부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첨 1\_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


	<p><b>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b></p>
---	---

별첨 1\_2. 2024년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 원, VAT미포함)

	<p><b>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b></p>
--	---

별첨 2. 재무제표(2022~2023)

	<p><b>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b></p>
---	---

##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 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